

「양성평등센터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06. 2. 28. 제정 판 (시행 2006. 3. 1.) → 2013. 8. 28. 개정 판 (시행 2013. 9. 1.)

바뀜 14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79/compare?from=435&to=436>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3:49:46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제3조의제4호,제17조제2-1호의 규정에 따라 삼육대학교 구성원간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책과 <u>성희롱.성폭력</u>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의 2의 규정을 바탕으로 삼육대학교 구성원 간에 <u>성희롱~~등~~성폭력~~등~~ 성매매</u> 대한 예방책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u>〈개정 2013-08-28〉</u>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에 대한 심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에 대한 심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③ 성매매”란 금전 등을 매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 이를 <u>연결하는 알선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신설 2013-08-28〉</u>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을 <u>충분히</u> 고려하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희롱 ~~등~~ 성폭력 ~~등~~ 성매매 ~~등~~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u>중심으로</u> 고려하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u>〈개정 2013-08-28〉</u>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를 담당한 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 <u>성희롱~~등~~성폭력~~등~~ 성매매</u> 사건처리를 담당한 자는 피해자의 주소 ~~등~~ 성명 ~~등~~ 연령 ~~등~~ 직업 ~~등~~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u>성희롱~~등~~성폭력~~등~~ 성매매</u>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u>〈개정 2013-08-28〉</u>
제6조(성희롱.성폭력상담소 설치) 삼육대학교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u>삼육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이하“상담소”이라 한다)</u> 를 둔다.	제6조(양성평등센터 설치) 삼육대학교 총장은 성희롱 ~~등~~ 성폭력 ~~등~~ 성매매 ~~등~~ 방교육을 실시하고, <u>사건발생 시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희롱~~등~~성폭력~~등~~ 성매매</u>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u>양성평등센터</u> 를

현행	개정안
	독립기관으로 둔다. <개정 2013-08-28>
제7조(상담소 구성) ① <u>상담소</u> 에는 <u>상담소장</u> 과 <u>간사</u> 와 <u>약간명</u> 의 <u>상담교수</u> 를 둔다. ② <u>상담소장</u> 은 <u>학생지원처</u> 의 <u>여학생부장</u> 으로 보하고 간사는 <u>여학생 생활관장</u> 으로 보한다. ③ <u>상담교수</u> 는 <u>본교</u> 의 <u>전임강사</u> <u>이상</u> 의 <u>교원</u> 으로 <u>상담소장</u> 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u>상담소장</u> 은 <u>상담소</u> 의 업무를 통괄하고 <u>상담소</u> 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u>상담소</u> 의 <u>직원</u> 은 <u>성희롱·성폭력상담소</u>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7조(양성평등센터 구성) ① <u>양성평등센터</u> 에는 <u>센터장</u> 과 <u>담당자</u> 로 구성되며, <u>학생생활 상담센터</u> 와 <u>업무협조관계</u> 를 맺음으로 <u>상담사 1인</u> 을 <u>외부구성원</u> 으로 포함한다. ② <u>양성평등센터장</u> (이하 “ <u>센터장</u> ”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u>양성평등센터</u> 담당자로 보한다. ③ <u>고충상담원</u> 은 <u>고충상담전문교육과정</u> 을 수료한 <u>정규직 교(직)원</u> 으로 <u>센터장</u> 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u>센터장</u> 은 <u>양성평등센터</u> 의 업무를 통괄하고 <u>양성평등센터</u> 담당자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u>양성평등센터</u> 담당자는 <u>성희롱</u> <u>성폭력</u> <u>성매매</u> <u>관련된</u>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3-08-28>
제8조(상담소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u>성희롱·성폭력</u>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이에 관한 <u>상담</u> ② <u>성희롱·성폭력</u>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③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u>성희롱·성폭력대책</u> 위원회에 즉시 보고 ④ <u>성희롱·성폭력</u>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8조(양성평등센터 업무)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u>성희롱</u> <u>성폭력</u> <u>성매매</u>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u>성희롱</u> <u>성폭력</u> <u>성매매</u>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u>성희롱</u> <u>성폭력</u> <u>성매매</u> <u>고충심의회</u> 에 즉시 보고 4. <u>성희롱</u> <u>성폭력</u> <u>성매매</u> 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13-08-28>
제9조(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설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 또는 대책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u>성희롱·성폭력대책</u> 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제9조(성희롱 <u>성폭력</u> <u>성매매</u> 중심의위원회 설치) 성희롱 <u>성폭력</u> <u>성매매</u> 건의 조사·처리 또는 대책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u>성희롱 <u>성폭력</u> <u>성매매</u> 고충</u>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8-28>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u>학생지원처장</u> (위원장), <u>여학생지원부장</u> (<u>상담소</u> 소장), <u>교무처장</u> , <u>대학원장</u> , <u>총무과장</u> , <u>교수 3인</u> , <u>직원 2인</u> , <u>학생 2인</u> 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 외부자문위원 1인을 둔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의 경우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하고, 외부인사는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② 당연직 위원 외 각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의 임기연한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교수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외부인사는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u>학생지원처장</u> (위원장), <u>양성평등센터장</u> (서기), <u>교무처장</u> , <u>대학원장</u> , <u>총무부장</u> , <u>남·여생활관장</u> , <u>교수 3인</u> , <u>직원 2인</u> , <u>학생 2인</u> 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 외부자문위원 1인을 두며,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7/10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의 경우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하고, 외부인사는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3-08-28> ② 당연직 위원 외 각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의 임기연한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교수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외부인사는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u>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u>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u>〈삭제 2013-08-28〉</u>
제1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제1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 성폭력 ~~·~~ <u>성매매</u>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희롱 ~~·~~ 성폭력 ~~·~~ <u>성매매</u>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법적 제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 <u>〈개정 2013-08-28〉</u>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u>상담소 소장</u> 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u>참가위원의 서명</u> 을 받아 상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u>센터장</u> 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u>서기</u> 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 ~~·~~ 성폭력 ~~·~~ <u>성매매</u> 건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u>〈개정 2013-08-28〉</u>
제14조(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 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u>상담소</u> 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u>상담소장</u> 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에게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한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한 가해자의 사과·봉사·배상 등 필요한 조치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제14조(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 및 처리) ① 성희롱 ~~·~~ 성폭력 ~~·~~ <u>성매매</u> 해자는 <u>양성평등센터</u> 에 성희롱 ~~·~~ 성폭력 ~~·~~ <u>성매매</u> 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u>센터장</u> 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에게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한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한 가해자의 사과·봉사·배상 등 필요한 조치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u>〈개정 2013-08-28〉</u>
제16조(비밀유지의무)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양성평등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의 규정을 바탕으로 삼육대학교 구성원 간에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에 대한 심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③ 성매매”란 금전 등을 매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 이를 연결하는 알선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사건처리를 담당한 자는 피해자의 주소 ㉮ 성명 ㉮ 연령 ㉮ 직업 ㉮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설치”를 “양성평등센터 설치”로 한다.

제6조 중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희롱.성폭력”을 “총장은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건발생 시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로 하고, “삼육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이하“상담소”이라 한다)를 둔다.”를 “양성평등센터를 독립기관으로 둔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양성평등센터 구성) ① 양성평등센터에는 센터장과 담당자로 구성되며, 학생생활상담센터와 업무협조관계를 맺음으로 상담사 1인을 외부구성원으로 포함한다.

② 양성평등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양성평등센터 담당자로 보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정규직 교(직)원으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장은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를 통괄하고 양성평등센터 담당자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양성평등센터 담당자는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와 관련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양성평등센터 업무)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4.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사건의 조사.처리 또는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양성평등센터장(서기), 교무처장, 대학원장, 총무부장, 남.여생활관장, 교수 3인, 직원 2인, 학생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 외부자문위원 1인을 두며,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7/10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의 경우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여하고, 외부인사는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② 당연직 위원 외 각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의 임기연한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교수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외부인사는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①위원장”을 “① 위원장”으로 하고, “대표하고,”를 “대표하고”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②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를 “② <삭제 2013-08-28>”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사건의 조사, 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법적 제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센터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사건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조사 및 처리) 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는 양성평등센터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사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에게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한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한 가해자의 사과·봉사·배상 등 필요한 조치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제16조 중 “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성매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